

차량별 구제역 방역 표준행동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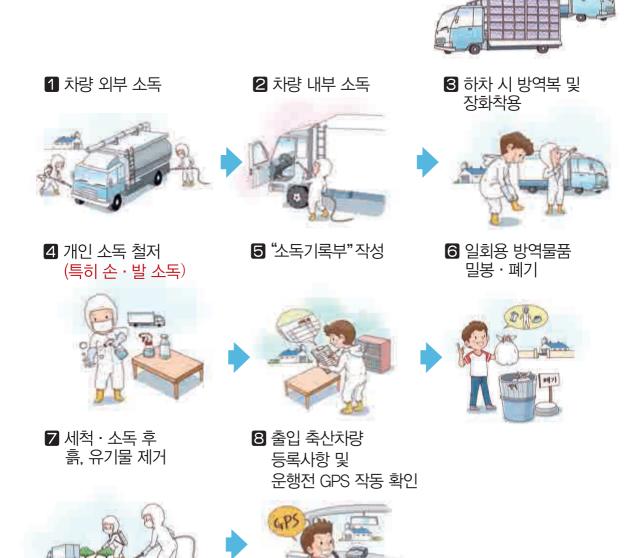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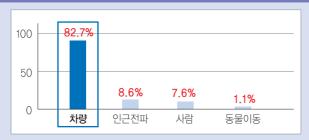
축산차량 구제역 차단방역 절차

철저한 **차단방역**과 주기적인 소독실시로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I 사료차량

2014~2015년 구제역 발생 185건의 전파원인 분석



차량에 의한 구제역 바이러스 농장 유입 경로



출입 차량 바퀴 주변 구제역 오염 유기물



운전석의 구제역 오염 유기물



농장내에 구제역 오염 유기물 유입



축사에 구제역 발생

1. 운행전 확인 사항

11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장착 및 작동여부 확인



I GPS 장착



I GPS 작동 확인



차량무선인식장치 미장착 등 처벌규정

- ※ 차량무선인식장치 미장착 또는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차량 운전자(소유주)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차량내 방역물품 점검
 - ※ 방역물품: 휴대용 소독기(소독약의 충진 상태), 비닐장화, 방역복, 마스크, 장갑 등
- 농가 방문 전 방문농가에 방문 날짜, 시간 등 사전 통보
- 2. 공장 출차
- 1 사료공장 내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비치되어 있는 "소독실시대장"에 기록 및 "소독필증" 발급
- 3. 농장 도착
- 1 농장 등 축산관련시설 방문 시 방문지 관리인(농장주 등)의 허락 후 출입
- ☑ 농장 내에서 가급적 농장 종사자와 접촉하지 않음
- "농장에 설치된 소독설비"를 통해 농장 출입 전 소독 실시



│ 차량 소독 실시



│ 차량 소독 실시

△ 차량에서 내리는 경우 차량 내부에서 전용 의복(방역복)과 신발을 착용한 후 차량 내부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소독약) 등으로 충분히 소독한 후 하차







│ 차량 내부 소독

5 대인소독기 통과 후 소독기록부 작성 (가축전염병예방법 17조)



│ 대인소독



│ 소독 기록부 작성

집 농장 방문시 농장에서 질병발생의 징후를 발견한 경우 방역기관에 신고

구제역 의심가축 발견시 신고처

※ 관할 지자체 (☎ 1588-4060)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1588-9060)





4. 농장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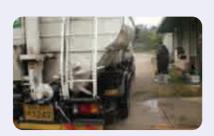
- 1 농장 출발 시 농장 내부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오염된 방역물품 및 1회용 방역물품은 비닐용기에 밀봉 처리 한 후 농장 내부의 지정된 구역에 폐기 처리
- ② 휴대용 소독기로 손·의복·신발 및 차량 내부를 소독하고 차량 외부는 **농장에 설치된** 소독장비를 통해 소독 실시
- ※ 차량 내부 소독은 휴대용 소독기를 이용하여 소독 실시



※ 차량 외부 소독은 1차 고압세척기로 차량 바퀴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2차 차량소독기로 전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합니다.

사료차량 세척 · 소독 요령

- ① 차량 외부의 유기물 제거를 위하여 고압세척기 등 세차장비를 이용하여 흙받이·차량바퀴 등을 세척
- ② 세척 후에는 차량 외부에 대해서 고압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소독 실시
 - *차량 외부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후 주변에 떨어진 흙이나 유기물은 반드시 차량 운전자가 수거하여 처리



l ① 사료차량 외부 세척



Ⅰ② 세척·소독 후 떨어진 흙, 유기물 제거

③ 차량 내부의 운전석·조수석 등(발판, 핸들, 변속기 등을)에는 휴대용 소독기를 사용하거나, 스펀지에 소독제를 묻혀서 닦는 방법으로 소독 실시



Ⅰ 차량 내부 소독



Ⅰ 차량 내부 소독

④ 운전자 및 동승자는 분무 소독 또는 대인소독기에서 소독



Ⅰ분무 소독



Ⅰ 대인소독기 소독



Ⅱ 분뇨차량



11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장착 및 작동여부 확인



I GPS 장착



I GPS 작동 확인

차량무선인식장치 미장착 등 처벌규정

● 차량무선인식장치 미장착 또는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차량 운전자(소유주)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차량내 방역물품 점검

※ 방역물품: 휴대용 소독기(소독약의 충진 상태), 비닐장화, 방역복, 마스크, 장갑 등

농가 방문 전 방문농가에 방문 날짜, 시간 등 사전 통보

2. 농장 출발

- 1 농장으로 출발 시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비치되어 있는 "소독실시대장"에 기록
 - ※ 추가로 타 농장 방문시에는 "거점소독시설" 방문 후 소독을 실시하고 이동

3. 농장 도착

- 1 농장 등 축산관련시설 방문 시 방문지 관리인(농장주 등)의 허락 후 출입
- 2 농장 내에서 가급적 농장 종사자와 접촉하지 않음
- 3 "농장에 설치된 소독설비"를 통해 농장 출입 전 소독 실시



│ 차량 소독 실시



│ 차량 소독 실시

△ 차량에서 내리는 경우 차량 내부에서 전용 의복(방역복)과 신발을 착용한 후 차량 내부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소독약) 등으로 충분히 소독한 후 하차



| 하차 시 방역복 및 장화 착용



| 휴대용 소독기로 소독



- **5** 대인소독기 통과 후 "소독기록부" 작성 (가축전염병예방법 17조)
- 등 농장 방문시 농장에서 질병발생의 징후를 발견한 경우 방역기관에 신고

구제역 의심가축 발견시 신고처

※ 관할 지자체 (☎ 1588-4060)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1588-9060)



4. 농장 출발

- 1 농장 출발 시 농장 입구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오염된 방역물품 및 1회용 방역물품은 비닐용기에 밀봉 처리 한 후 농장 내부의 지정된 구역에 폐기 처리
- ② 휴대용 소독기로 손·의복·신발 및 차량 내부를 소독하고 차량 외부는 농장에 설치된 소독장비를 통해 소독 실시
- ※ 차량 내부 소독은 휴대용 소독기를 이용하여 소독 실시
- 차량 운행중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 분뇨의 낙하 방지를 위해 적재함 가림시설 설치

분뇨 운반차량 소독 미실시 차량 처벌 규정

畿 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

분뇨차량 세척 · 소독 요령

- ① 차량 외부의 유기물 제거를 위하여 고압세척기 등 세차장비를 이용하여 흙받이·차량바퀴 등을 세척
- ② 세척 후에는 차량 외부에 대해서 고압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소독 실시
 - *차량 외부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후 주변에 떨어진 흙이나 유기물은 반드시 차량 운전자가 수거하여 처리



Ⅰ 분뇨차량 외부 세척



I 세척 · 소독 후 떨어진 흙, 유기물 제거

③ 차량 내부의 운전석·조수석 등(발판, 핸들, 변속기 등을)에는 휴대용 소독기를 사용하거나. 스펀지에 소독제를 묻혀서 닦는 방법으로 소독 실시



│ 차량 내부 소독



Ⅰ 차량 내부 소독

④ 운전자 및 동승자는 분무 소독 또는 대인 소독기에서 소독



I 대인소독기 통과



l 소독 기록 작성



Ⅲ 생축이동 차량

1. 운행전 확인 사항

11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장착 및 작동여부 확인





I GPS 장착

I GPS 작동 확인

차량무선인식장치 미장착 등 처벌규정

- 차량무선인식장치 미장착 또는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차량 운전자(소유주)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차량내 방역물품 점검
 - ※ 방역물품: 휴대용 소독기(소독약의 충진 상태), 비닐장화, 방역복, 마스크, 장갑 등
- **③** 농가 방문 전 방문농가에 방문 날짜, 시간 등 사전 통보
- 2. 농장 출발
- 1 농장으로 출발 시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비치되어 있는 "소독실시대장"에 기록
- ※ 추가로 타 농장 방문시에는 "거점소독시설" 방문 후 소독을 실시하고 이동

3. 농장 도착

- 1 농장 등 축산관련시설 방문 시 방문지 관리인(농장주 등)의 허락 후 출입
- | 농장 내에서 가급적 농장 종사자와 접촉하지 않음
- (3) "농장에 설치된 소독설비"를 통해 농장 출입 전 소독 실시



│ 차량 소독 실시



│ 차량 소독 실시

△ 차량에서 내리는 경우 차량 내부에서 전용 의복(방역복)과 신발을 착용한 후 차량 내부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소독약) 등으로 충분히 소독한 후 하차



| 하차 시 방역복 및 장화 착용



l 휴대용 소독기로 소독

- 5 대인소독기 통과 후 "소독기록부" 작성
- ③ 차량 운전자는 생축 이동 시 생축 이동을 위하여 축사에 출입하거나 생축 이동에 관여하지 않아야 함
- ☑ 차량 운전자는 "구제역예방접종증명서"를 수령하여 휴대하여야 하며, 증명서가 없는 경우이동을 금지해야 하고 관할 시·군에 신고하여야 함

8 농장 방문시 농장에서 질병발생의 징후를 발견한 경우 방역기관에 신고

구제역 의심가축 발견시 신고처

※ 관할 지자체 (☎ 1588-4060)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1588-9060)



4. 농장 출발

- 1 농장 출발 시 농장 입구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오염된 방역물품 및 사용한 1회용 방역 물품은 비닐용기에 밀봉 처리 한 후 농장 내부의 지정된 구역에 폐기 처리
- ② 휴대용 소독기로 손·의복·신발 및 차량 내부를 소독하고 차량 외부는 **농장에 설치된** 소독장비를 통해 소독 실시
- 차량 운행중 생축의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 생축 운반 시 분변 등의 낙하 방지를 위해 적재함 가림시설 설치

생축이동차량 세척 · 소독 요령

- ① 차량 외부의 유기물 제거를 위하여 고압세척기 등 세차장비를 이용하여 흙받이·차량바퀴 등을 세척
- ② 세척 후에는 차량 외부에 대해서 고압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소독 실시
 - *차량 외부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후 주변에 떨어진 흙이나 유기물은 반드시 차량 운전자가 수거하여 처리



I 생축 이동 차량 외부 세척



Ⅰ 세척·소독 후 떨어진 흙, 유기물 제거

③ 차량 내부의 운전석·조수석 등(발판, 핸들, 변속기 등을)에는 휴대용 소독기를 사용하거나, 스펀지에 소독제를 묻혀서 닦는 방법으로 소독 실시







Ⅰ 차량 내부 소독

④ 운전자 및 동승자는 분무 소독 또는 출입자 소독기에서 소독



Ⅰ 분무 소독



Ⅰ 대인소독기 소독

⑤ 생축이동차량 세척·소독요령 설명



Ⅰ 생축 탑재 상태



Ⅰ 차량바퀴 등 세척·소독



IV 정액 운반 차량

1. 운행전 확인 사항

11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장착 및 작동여부 확인



I GPS 장착



I GPS 작동 확인

차량무선인식장치 미장착 등 처벌규정

- 차량무선인식장치 미장착 또는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차량 운전자(소유주)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차량내 방역물품 점검
 - ※ 방역물품: 휴대용 소독기(소독약의 충진 상태), 비닐장화, 방역복, 마스크, 장갑 등
- 농가 방문 전 방문농가에 대해 날짜, 시간 등 사전 통보
- 일회용 정액운반용 아이스박스 사용을 권장, 그러지 못할 경우 농장에 준비된 정액 온장고에 입고
- 정액운반차량은 1일 1회 이상 차량 내부를 세척 → 소독 → 건조 실시

2. 농장 출발

- 1 농장으로 출발 시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비치되어 있는 "소독실시대장"에 기록
- ※ 추가로 타 농장 방문시에는 "거점소독시설" 방문 후 소독을 실시하고 이동

3. 농장 도착

- 1 농장 등 축산관련시설 방문 시 방문지 관리인(농장주 등)의 허락 후 출입
- 2 농장 내에서 가급적 농장 종사자와 접촉하지 않음
- (공) "농장에 설치된 소독설비"를 통해 농장 출입 전 소독 실시



│ 차량 소독 실시



│ 차량 소독 실시

△ 차량에서 내리는 경우 차량 내부에서 전용 의복(방역복)과 신발을 착용한 후 차량 내부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소독약) 등으로 충분히 소독한 후 하차



| 하차 시 방역복 및 장화 착용



| 휴대용 소독기로 소독

5 기급적 농장 내부로 진입하지 않고, 농장 외부에 비치된 정액 보관 온장고에 정액을 적재한 후 이동



| 농장 외부 정액 온장고



| 농장 외부 정액 온장고



6 대인소독기 통과 후 "소독기록부" 작성 (가축전염병예방법 17조)



│ 대인소독기 통과



Ⅰ "소독 기록부" 작성

☑ 농장 방문시 농장에서 질병발생의 징후를 발견한 경우 방역기관에 신고

구제역 의심가축 발견시 신고처

※ 관할 지자체 (☎ 1588-4060)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1588-9060)



4. 농장 출발

- 1 농장 출발 시 농장 입구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오염된 방역물품 및 사용한 1회용 방역 물품은 비닐용기에 밀봉 처리 한 후 농장 내부의 지정된 구역에 폐기 처리
- ≥ 농장에 설치된 소독설비를 통해 차량외부 소독, 차량내부는 휴대용 소독기 사용



| 일회용 방역물품 밀봉 · 폐기



| 휴대용 소독기 사용 소독

정액 운반 차량 세척 · 소독 요령

- ① 차량 외부의 유기물 제거를 위하여 세차장비 또는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차량 외부(특히, 흙받이·차량바퀴 등) 세척 실시
- ② 세척 후에는 차량 외부에 대해서 고압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차량 외부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후 주변에 떨어진 흙이나 유기물은 반드시 차량 운전자가 수거하여 처리



Ⅰ 정액 운반 차량 외부 세척



Ⅰ 세척 · 소독 후 흙. 유기물 제거

③ 차량 내부 운전석 및 조수석 등에는 간이소독기를 사용하거나 스펀지에 소독제를 묻혀서 닦는 방법으로 소독 실시



Ⅰ 차량 내부 소독



Ⅰ 차량 내부/발판 소독

④ 운전자 및 동승자는 분무 소독 또는 출입자 소독기에서 소독



Ⅰ분무 소독



Ⅰ 대인소독기 소독

철저한 차단방역과 주기적인 소독실시로 가축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제역 의심축 발견시 신고처 1588-9060 / 1588-4060

● 차량무선인식장치 미장착 또는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차량 운전자(소유주)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